

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0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 등 4개구 2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로 '87년 운영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(주-탄천환경)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7.12.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

나.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※ 의회 동의 규정 신설('12.12.31.)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하여 그동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로 도래되는 재위탁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 개정('17.7.13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위탁기간 : 2018. 1. 1 ~ 2020. 12. 31 (36개월)
- 소요예산 : 연 36,664,166천원 (월 3,055,347천원)_최근 3년

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

- 수탁사 선정 : 공개경쟁입찰

나. 시설현황

- 위 치 : 강남구 개포로 625(강만구 일원동 580)
- 부지면적 : 393,000m²
- 시설용량 : 90만m³/일
- 차집관로 : 97km(하천수 7개소)
- 처리구역 : 80.21km²
 - 강동·송파구(전역), 강남·서초구·과천시·하남시(일부)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-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-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
-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하수도법 제74조 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〈 그간의 위탁경과 〉

◇탄천물재생센터 개원	: 1987. 12. 9
◇최초위탁(1차)	: 2000.4.1. ~ 2002.12.31. [수탁업체 : (주)탄천환경]
◇재계약(2차)	: 2003.1.1. ~ 2005.12.31. [“]
◇재계약(3차)	: 2006.1.1. ~ 2008.12.31. [“]
◇재계약(4차)	: 2009.1.1. ~ 2011.12.31. [“]
◇재계약(5차)	: 2012.1.1. ~ 2014.12.31. [“]
◇재계약(6차)	: 2015.1.1. ~ 2017.12.31. [“]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물재생시설은 생활하수의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
- 민간의 물재생센터 운영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하수도법 제74조

▶ 제74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 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부칙]

▶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▶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90.00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,
직영센터(평균 86.64)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하므로 민간위탁 제안
- ※ 「2016년 물재생센터 운영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」(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, '17. 3. 31)
- ※ 작성자 : 물재생시설과 위탁관리팀 김명훈(☎2133-3843)

탄천물재생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민간위탁 성과보고서

□ 민간위탁사업 개요

○ 추진근거

- 하수도법 제74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 등)
 - ◇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 - ◇ 제6조 제2호 :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 - ◇ 제7조 제1항 :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을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추진경과

- 탄천물재생센터 개원 : 1987. 12. 9
- 최초위탁(1차) : 2000.4.1. ~ 2002.12.31. [수탁업체 : (주)탄천환경]
- 재 계 약(2차) : 2003.1.1. ~ 2005.12.31. [“]
- 재 계 약(3차) : 2006.1.1. ~ 2008.12.31. [“]
- 재 계 약(4차) : 2009.1.1. ~ 2011.12.31. [“]
- 재 계 약(5차) : 2012.1.1. ~ 2014.12.31. [“]
- 재 계 약(6차) : 2015.1.1. ~ 2017.12.31. [“]

○ 사업내용

- 위탁사무 :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 - ◇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
 - ◇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법정수질 준수
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
- 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 (36개월)

○ 사업현황

- 시설현황

- ◇ 위치 : 강남구 개포로 625(강만구 일원동 580)
- ◇ 부지면적 : 393,000 m^2
- ◇ 시설용량 : 90만 m^3 /일
- ◇ 차집관로 : 97km(하천수 7개소)
- ◇ 처리구역 : 80.21 km^2

[강동·송파구(전역), 강남·서초구·과천시·하남시(일부)]

-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년도별	사업예산			비 고
	계	정산비	비정산비	
2014년	35,378	25,389	9,989	정산비 : 시설비 비정산비 : 인건비
2015년	35,731	25,690	10,041	
2016년	38,883	28,566	10,317	

※ 2017년 예산 : 36,637(정산비 26,232, 비정산비 10,405)

- 운영현황

- ◇ 하수(슬러지) 처리

(단위: m^3)

구 분 년도별	2014년	2015년	2016년	비 고
하수 처리 (일평균)	271,186,697 (742,976)	267,778,356 (733,639)	268,653,985 (734,027)	하수 : 연평균
슬러지 처리 (일평균)	109,500 (300)	110,230 (302)	111,690 (306)	슬러지: 연평균

- ◇ 수질관리

(단위 : mg/L, 총대장균군수 : 개/ml)

구 분		BOD	COD	SS	T-N	T-P	총대장균군수
2014년	유 입	122.9	65.2	123.5	34.2	3.6	142,008
	방 류	6.4	9.3	3.1	12.3	0.4	830
2015년	유 입	128.3	62.2	125.5	35.9	3.8	126,431
	방 류	5.3	8.5	3.1	11.3	0.4	1,060
2016년	유 입	129.3	64.2	120.8	36.8	3.9	144,481
	방 류	5.2	7.7	2.4	11.7	0.3	841

□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

○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

-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목표 : 90점 이상(탁월)
 - ◇ 평가내용 : 수탁업무 이행 적정성(효율성)
 - ◇ 평가기준 : 환경부 지표(31개), 서울시 자체지표(8개)
 - 환경부 지표 : 4개 분야 31개(하수처리 효율, 민원처리율 등)
 - 자체지표 : 1개 분야 8개(슬러지처리시설 가동률, 계약방법 개선률 등)
 - ◇ 시행근거 :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4(매 1년마다 성과평가 실시)

○ 추진실적

- 운영성과 목표(계획) 대비 실적(최근 3년간)

구 분	목 표	실 적	달 성 율
2014년	90점 이상	93.4점	100%
2015년	90점 이상	92.6점	100%
2016년	90점 이상	90.0점	100%

- 세부실적 내역

구 분		2014년	2015년	2016년
평 균		93.43	92.61	90.00
대행업체(인력)	근무년수, 자격보유율	16.7	18.29	18.70
하수처리시설	하수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사용약품 절감율 에너지절감율	19.1	17.25	18.94
하수찌꺼기 및 재이용	소화조 운영효율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율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	20.29	19.81	15.68
서비스 질	처리수 재이용률 탁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	19.21	19.02	20.25
운영관리	처리수 재이용률 탁수케익 함수율 계약방법 개선률	18.13	18.24	16.43

- 위탁비(협약액) 집행실적

구 분	예 산(백만원)	집 행(백만원)	집행율(%)	비 고
2014년	35,378	32,385	91.5	
2015년	35,731	32,468	90.9	
2016년 (공공운영비)	24,800 (14,083)	23,106	93.2	공공운영비 "시"에서 집행

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○ 성과평가 결과

- 운영실적 평가결과 3년간 평균점수가 90.00점 이상(탁월)으로 성과목표(90.00)초과는 물론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운영성과가 탁월함.
- 또한 직영센터(평균 86.64)에 비해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됨.

[센터별 성과평가 결과('14~'16)]

평가분야	직영 및 전체위탁			
	중랑(직영)	난지(직영)	탄천(위탁)	서남(위탁)
평균점수(3년간 평균)	86.01	87.27	92.00	90.22

○ **향후계획(추진방향)**

-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
 - ◇ 운영성과 평가결과 직영센터 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**민간위탁 추진**
-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
 - ◇ 부진분야 개선대책 수립 시행
 - ◇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시행
 - ◇ 평가결과(위탁) 및 개선 건의사항 환경부 제출
- 차기(2018년) 관리대행업자 선정 : 공개경쟁입찰 시행
 - ◇ 보다 기술력있는 업체의 참여로 재계약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경영 합리화 등 효율적 운영 도모